의료관광 대상 주요국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 현황

2021. 7. 23 (금) 기준

* 아래 조치 현황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해당 **출처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hina

* 출처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 92,414명 (사망 4,636명)	사망률 : 5.0%
대응조치	**▶ 입국관련 조치(중국 내 공통사항)** ○ (3.28.)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4.1.)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 ○ (8.5.)한국인의 경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 ○ (9.28.)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 :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비자신청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3.9) 백신여권출시 : '국제여행 건강증명서' 디지털 발급 시스템을 위챗 미니앱으로 정식 개통, 국가 간 상호인증 논의 추진 중 ○ (6.11)광둥성 코로나19'중·고위험'지역으로 주민 관외 여행금지 권고 **▶ 입국관련 조치(홍콩)** ○ (4.6.)홍콩 비거주자의 입국 금지 -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12.25.이후)입국자 검사 결과 확인 후 정부지정호텔에 21일 격리 및 전자손목밴드 착용(격리중 11일째 검사/격리후 19,20일째 검사) - (12.2-12.24)입국자 14일 격리 후 7일 추가 격리 및 도착 19,20일째 검사 결과 확인 후 격리 해제 - 선박 및 항공 승무원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및 입국 후 타액 샘플 제출 -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최근 21일 이내 체류(환승 포함)한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검역 규정 적용 ○ (6.1.)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 (5.12~)홍콩 외 지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인정하는 백신접종완료 및 14일경과 후 입국 시 - 고·중위험 국가(한국 포함) 방문자 : 14일 시설격리 - 저위험 국가 방문자 : 7일 시설격리 후 추가 7일은 능동감시 실시 - 대만 출발 여행객에게 21일 격리조치 적용 ○ 일부 방역규제 완화 및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 입국관련 조치(대만)** ○ 21.5.19.부터 거주증 소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대만에서의 단순 경유도 금지 ▸예외적 입국 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방역호텔·집중검역시설·자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4.26~)격리위반 외국인에 최대 4천만원 벌금 부과 예정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실시 (6.22)	*** 출처 및 참고링크** 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upload/cntnts/cn-zh/visa_new.pdf 2. 각 지역 정부망 http://www.gov.cn/ 3. Bendibao(本地宝) http://heb.bendibao.com/news/202049/54293.shtm 4. 대만위생복지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v.tw/ 5. 대만외교부 영사국 https://www.boca.gov.tw/mp-1.html 6.대만 이민서 https://www.immigration.gov.tw/ 7.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r.china-embassy.org/kor/ 8.건강 OR코드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웹사이트 https://hrhk.cs.mfa.gov.cn/H5/
기 타	**▶ 특이사항** ○ **(중국)** 중국산 백신 두 번째 WHO 긴급사용 승인(6.1) ○ **(홍콩)** 중국국적 방문객과 망명신청자에게 백신 무료접종 ○ **(대만)** 전국 3단계 위생경보 6.28까지 연장 ○ **(홍콩)** 백신 접종률 증가 시 방역 규정 완화 가능 ○ **(대만)** 전 지역 전염병경계등급 3단계 조치 2주 연장 안내(7.12.까지)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4(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 19 백신 누적 접종 횟수가 13억 회를 돌파 ○ **(대만)**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MVC-COV1901 긴급승인 (7.19)	

Japan

* 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 853,137명 (사망 15,046명) * 긴급사태선언(~8.22) : 도쿄, 오키나와 만연방지 중점조치(~8.22) :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오사카부	사망률 : 1.8%
대응조치	▶ 사증발급 관련 ○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 계속) -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사증 신청 인정 ※특별한 사정 판단 문의 : 사증 상담용 주소: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 입국관련 조치 ○(21.3.22.)당분간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 (21.1.9.~)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 (21.1.13.~)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PCR 검사증명서 제출 (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입국 후 3일째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대기(입국 후 14일간)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및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자가격리 조치 ○ 입국 전 스스로 자택 혹은 시설, 교통(자차, 렌트카 등) 확보 ○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 금지 ○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건강상태 보고 ○ 비용 모두 본인 부담 ○ 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입국 시에도 14일 자가격리 필요	긴급사태선언 관련 : -https://corona.go.jp/ko/ -https://news.yahoo.co.jp/pages/article/20210102 주한일본대사관 :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ja/index.html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jp-ja/index.do 위생노동성 : https://www.mhlw.go.jp/index.html 특별입국 시 필요한 어플 등록·이용 방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50.html
기 타	▶ 항공운항 관련 ○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 간사이공항, 주부국제공항으로 한정 ○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 환승 가능 ▶ 특이사항 ○ **변이바이러스 대책** - 일본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 제출 - 변이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스페인,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외 26개국 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입국 후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3~6일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 시 대중교통 이용없이 자택에서 추가 14일 격리 ○ **백신접종 관련** - 6월 중순부터 65세 미만 국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 백신 접종 대상 : 1. 화이자 : 12세이상 2. 모더나 : 18세이상 - 백신 접종 순위 1. 의료종사자 2. 고령자 3. 고령자 외 기초질환 환자/고령시설 종사자 4. 그 외 ○ (7.9)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결정 ○ (7.19) 12~17세 모더나 백신 사용 및 칵테일요법 승인	한-일 항공편 참고 : https://www.tokutenryoko.com/service/airticket/64 - ANA항공 : 9월말까지 비운항 - JAL항공 : 9월말까지 비운항 변이바이러스 대책 관련 : https://www.mhlw.go.jp/content/000729027.pdf 백신접종 관련 : 1.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18.html 2.https://www.kr.emb-japan.go.jp/people/anzen/safety_210421_covid19_4.pdf 3.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vaccine_00184.html

CIS(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출처 :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주러시아 대한민국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러 시 아) 확진자 : 5,955,089명 (사망 148,229명) ● 카자흐스탄) 확진자 : 568,915명 (사망 5,180명) ● 우즈베키스탄) 확진자 : 121,329명 (사망 809명)	사망률 2.5% 사망률 0.9% 사망률 0.7%
대응조치	▶ **러시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21.4.16~)한국-러시아 운항 재개 및 러시아 입국 허용 (육로 입국 불허용)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20.3.30.~)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공식 대표부 등 소속직원, 국제운송차량 운전자, 하천 선박승무원 등 제외 ○ (21.7.7~)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코로나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자가격리 면제 ▶ **카자흐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21.5.3.~) 카자흐스탄에서 백신접종 완료 카자흐스탄 국민 및 영주권자는 카자흐스탄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가능 ※ 만 5세 이하인 자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 - (21.5.12~) 누르술탄 국제공항 내 'Ashyq' 앱 사용 의무화 (감염 확인 앱) - 코스타나이 지역 코로나19 경보 녹색으로 하향 조정 - 누르술탄 국제공항 14개 국가에 대한 항공편 운항 재개 ▶ **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항공편 방역등급상 적색 국가(한국, 일본 등 56개국)에서 출발 승객 탑승 전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제출 - (6.11)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제출할 경우 2주 자가격리 의무 폐지 ※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기관 지정 (대사관 홈페이지, 해당 항공사 안내 등 확인 요망) ○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및 거주 무국적자의 경우 14일 격리 ○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1.29부터 사증발급 업무 재개 - 대상 : 장기사증 (유학, 취업, 재외동포, 해외투자이민 등)	*** 출처 및 참고링크** 1.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33/list.do?page=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2.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4/list.do 3.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uz-ko/brd/m_8555/list.do
기 타	▶ **항공 운항 관련 등 (러시아)** - 대한항공 : KE923/4(인천↔모스크바) ~ 8월말까지 주1회 운항 ▶ **항공 운항 관련 등 (카자흐스탄)** - 에어아스타나 항공 : 7.1부터 월,요일, 금요일 - 아시아나 : OZ577/578(인천 ↔ 알마티) ~8/31 주 1회 운항 ▶ **항공 운항 관련 등 (우즈베키스탄)** - 아시아나 : OZ573/574 (인천 ↔ 타슈켄트) ~ 8/31 주 1회 운항 - 대한항공 : KE941/2 (인천 ↔ 타슈켄트) ~ 8/31 주 1회(수) 운항 ▶ **특이사항** ○ **(러시아)** - 총인구의 14.8% 백신 접종 완료(2150만명이 최소 1회분의 백신 접종완료) - (6.16) 모스크바, 서비스업종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 푸틴, 스푸트니크V 접종 - 소치, 코로나 없는 해수욕장 개장 (백신 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사람만 입장 가능) - 소치 등 흑해 연안 휴양도시들, 관광객 백신 접종 의무화 - 조종사·승무원, 72시간마다 코로나19 검사 - (7.13~) 상트페테부르크 75인 이상 집합 금지 ○ **(우즈베키스탄)** -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시작 - 러시아와 스푸트니크V 국내 생산 협의 - 델타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 경고 - 자발적 백신 접종 참여 학생에게 등록금 할인 ○ **(카자흐스탄)** - 인도 입국자 PCR검사서 지참유무 및 백신접종 여부관계없이 14일 자가격리 실시 - 카자흐스탄 자체 생산 백신 WHO 긴급 사용 승인 시도 - 주변6개국과 백신여권 상호인증 (몽골,몰도바,헝가리,태국,그루지야,키르기스스탄) - (7.21)전국 코로나 위험 또는 경계 지역으로 지정	

Vietnam

* 출처 :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환자 : 71,144명 (사망 5,537명)	사망률 : 0.5%
대응조치	▶ 사증발급 관련 ○ (20.3.22.~)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외교·공무·특수 경우 : 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고급 기술인력 ※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예외적 입국 가능 경우 : (20.8.3.)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작성 및 제출,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21일간 격리 - 시설격리 기간 중 3회 코로나19 검사(격리 1일, 14일, 20일째) -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자가격리(자가 및 체류지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하며, 자가격리 7일째 코로나19 검사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기 타	▶ 항공운항 관련 - 대한항공 KE679 (인천-하노이) ~8월말까지 비운항 KE680 (하노이-인천) ~8월말까지 화수금일 운항 - 아시아나 OZ733 (인천 → 하노이) ~8/31 비운항 OZ734(하노이→인천) 8/1~8/31 주 6회 운항 ▶ 특이사항 ○ (3.8~) 의료 종사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 (4.6)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정 진행 중 ○ (4.13)올해 말까지 백신 35만 회분 접종 예정(의료진, 코로나 관리팀 우선 접종) - 현재까지 약8,000명 접종 완료/2차 백신 53,000회분 확보 - 인도·영국 혼합 변이 바이러스 출현 ○ (6.11)시노백 백신 수입 승인 ○ (6.22)하노이 방역수칙 완화 ○ (6.29)모더나 백신 조건부 긴급 사용 승인 ○ (7.18) 하노이 지역감염 확산으로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운행 중단	-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Thailand

* 출처 :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환자 : 439,477명 (사망 3,610명)	사망률 : 0.8%
대응조치	▶ 사증발급 관련 ○ (20.4.13~)한-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 (20.12.17.)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운동 선수 예외 ▶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20.7.1.~) 제한적 입국 허용 ○ 입국 전 : 출국전 14일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 발행 입국 허가증(COE),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10만불 이상의 치료비 (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입국 후 :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 설치, 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규정 준수, RT-PCR 방식 코로나 검사 ○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시 약 640달러의 벌금 부과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22304/list.do 태국 입국 가능 외국인 유형 : http://overseas.mofa.go.kr/th-ko/brd/m_3246/view.do?seq=1280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기 타	▶ 항공운항 관련 - 대한항공 KE651/652 (인천→방콕) 8월말까지 매일운항 - 아시아나 OZ741/742(인천 ↔ 방콕) ~7/31 주 4회/ 8/2~9/1 매일 운항 ○ 태국 공항내 국제선 환승 3.1부터 재개 (수완나품 공항) ▶ 특이사항 - (7.19~8.2) 푸켓 섬 방역조치 강화 : 유흥업소 임시 폐쇄, 영업시간 제한	